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화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9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5990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화 (안 제17조의2제4항)	2
※ 참고자료	23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1599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화(안 제17조의2제4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歩道)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u>대상시설</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 ⑦ (생략)	④ ----- -----<u>대상시설</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歩道)를 포함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이하 “BF인증”) 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¹⁾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²⁾을 설치한 대상시설
(교통수단³⁾·여객시설⁴⁾ 및 도로⁵⁾를 말함⁶⁾ 또는 대상시설을 계획·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비한 지역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임⁷⁾.

BF인증은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 제17조의2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의4⁸⁾에서는 특히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광역철도,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도록 의무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7) 참고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외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BF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무인증 대상시설은 대부분 여객시설 위주이며, 이동 경로에 해당하는 도로는 설치 주체가 국가·지자체이나⁹⁾ 의무인증 대상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BF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25년까지 BF인증을 받은 도로 는 본인증 전에 설치계획 또는 설치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9건에 불과하며, 본인증을 받은 실적은 전혀 없음.(참고. 참조)

【 BF인증(예비인증 포함) 실적 】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여객 시설	338	97	42	28	65	38	25	16	27	32
	(91)	(22)	(23)	(7)	(10)	(17)	(6)	(2)	(4)	(12)
교통 수단	11	0	0	3	3	2	1	1	1	2
	(10)	(0)	(0)	(3)	(3)	(2)	(0)	(1)	(1)	(2)
도로	9	8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역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는 본인증 건수

자료 : 국토교통부

9)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이에 개정안(안 제17조의2제4항 및 부칙 제2조)은 의무인증 대상시설 범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¹⁰⁾ 안의 ‘보도’를 추가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개발이나 정비가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준에 설치된 보도나

1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곳의 미관을 개선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보다 양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보통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나 정비가 필요한 곳이 지정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③ (생략)

새로 조성하는 보도 모두에 대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형, 인접 건물 등으로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 수준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개발·정비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요건을 범정화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보도에 대해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보도’를 의무인증 대상시설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4항에서 대상시설에 ‘보도’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도 대상시설은 차도, 보도 등으로 구성되는 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현행법과 다르지 않아 ‘보도’의 의무인증 대상시설 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됨.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의무인증 대상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현재 BF인증 의무 부과는 현행법 제17조의2제4항에 근거하나, 구체

적 시설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특정 시설(보도)에 대해서만 인증 의무를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도로 및 보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지형 상황 및 도로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의 기울기¹¹⁾ 기준 이하로 맞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상당수 발생함.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에 BF 인증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 기준 충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상당수 발생하는 현실에서 설계기준 강화 및 인허가 절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의 적기 이행 차질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584

11) BF인증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보도 (BF 인증 기준)	도로(보도 포함) (도로법 등)
최대 기울기	1/18(약 5.6%) 이내, * 불가피한 경우 1/12(약 8.3%)	3~16% 이내(설계속도별), * 불가피한 경우 1% 가산

참고

BF인증제도 운영실적

구분	합계	2008~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17,662	2,589	1,654	1,755	2,255	2,222	2,125	2,422	2,640	2,750
예비 인증	11,317	2,015	1,041	1,015	1,301	1,242	1,343	1,677	1,683	1,697
본인증	6,345	574	613	740	954	980	782	745	957	1,053
대상 종류별	17,662	2,589	1,654	1,755	2,255	2,222	2,125	2,422	2,640	2,750
	(6,345)	(574)	(613)	(740)	(954)	(980)	(782)	(745)	(957)	(1,053)
건축물	17,113	2,473	1,610	1,722	2,185	2,180	2,085	2,354	2,504	2,587
	(6,214)	(547)	(589)	(730)	(940)	(960)	(773)	(738)	(937)	(1,017)
여객 시설	338	97	42	28	65	38	25	16	27	32
	(91)	(22)	(23)	(7)	(10)	(17)	(6)	(2)	(4)	(12)
교통 수단	11	0	0	3	3	2	1	1	1	2
	(10)	(0)	(0)	(3)	(3)	(2)	(0)	(1)	(1)	(2)
공원	190	10	2	2	2	1	15	51	108	129
	(30)	(5)	(1)	(0)	(1)	(1)	(3)	(4)	(15)	(22)
도로	9	8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역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는 본인증 건수

※ 건축물, 공원에 대한 BF인증은 보건복지부 소관임.

자료 : 국토교통부